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6호 2023. 2. 1(수)

선 람	기관의 장

##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858호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1
- 남원시 조례 제1859호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4
- 남원시 조례 제1860호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8
- 남원시 조례 제1861호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10
- 남원시 조례 제1862호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15
- 남원시 조례 제1863호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 17
- 남원시 조례 제1864호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23
- 남원시 조례 제1865호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31
- 남원시 조례 제1866호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33

##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3-1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37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61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
- 남원시 공고 제2023-166호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8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 1858 호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단서 “다만, 기술용역, 일반용역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제3호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으로 한다.

제3조제4호를,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 보

현 행	개 정 안
<p><u>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u>  <u>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u>            &lt;개정 2022.4.29.&gt;</p>	<p><u>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u> 반조건</p> <p>4. (현행 3.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 1859 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남원시 동의 통·반장 정수 및 통·반의 관할구역**  
**총괄표**

행정동	법정동수	통 수	통장정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23	<u>162</u>	<u>162</u>	<u>759</u>	<u>759</u>	
동충동	1	13	13	61	61	
죽향동	3	13	13	69	69	
노암동	3	20	20	87	87	
금동	3	23	23	114	114	
왕정동	3	<u>16</u>	<u>16</u>	<u>71</u>	<u>71</u>	
향교동	5	29	29	117	117	
도통동	5	48	48	240	240	

(중략)

동	통	통장 정수	반	관 할 구 역
왕정동	15	1	1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1동(101~1501, 102~1502, 103~1503, 104~1504)
			2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4동(101~1501, 102~1502, 103~1503, 104~1504)
			3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5동(101~1501, 102~1502, 103~1503, 104~1504)
			4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6동(201~1301, 202~1302, 203~1303, 204~1004)
	16	1	1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2동(101~1501, 202~1502, 103~1503, 104~1504)
			2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3동(101~1501, 102~1502, 103~1503, 104~1504 205~1505, 206~1506)
			3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7동(201~1301, 102~1302)
			4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8동(101~1301, 102~1302, 103~1303, 104~1304)

###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 1860 호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해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공개모집”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생략)</p> <p>② 부단장 및 단무장, 사무장은 해당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lt;단서 신설&gt;</p> <p>③ 상임 전문단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u> <u>해당 -----</u> ----- . 다만, 부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p> <p>③ ----- <u>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u> 공개모집-----.</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 1861 호

###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 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 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 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남원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 유학 활동가"란 농촌 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 유학 지원계획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촌 유학사업

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남원시 농촌 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 유학 육성·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 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 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 유학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농촌 유학센터 운영) 시장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촌 유학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농촌 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 유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농촌 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농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 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3. 농촌 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4.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촌 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 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 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농촌 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 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 1862 호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원대상자”를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기준)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목욕 및 이·미용권은 <u>지원대상자</u> 한 명당 매월 1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lt;후단 신설&gt;</p> <p>3. <u>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u>은 1매당 5,000원으로 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u>이용자</u> 본인이 부담한다.</p>	<p>제3조(지원기준)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u>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u>지원대상자</u> ----- ----. <u>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u> 지급할 수 있다.</p> <p>&lt;삭제&gt;</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 1863 호

###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

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가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성별영향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평가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 대상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전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의 목적 및 개요

2. 평가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시 소관 정책

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남원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업무소관 국장

2.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5조제4호에서 인용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각각 개정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 1864 호

###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약”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 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4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6. “착한 임대인”이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상권에 대한 임대차관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대료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맞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영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7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 상인 보호 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임대료 등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는 내용을 수반한 지역개발사업

5. 그 밖에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장은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도록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 및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 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 또는 지정된 상가에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착한 임대인 지정) 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착한 임대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 조성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기간만큼 남원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2. 그 밖에 상생협력 상가 조성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 상가 조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
3. 상권분석, 부동산, 경제 등 상권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4.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협력 업무 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지정은 법 제12조 및 제15조,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제1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활성화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차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상인(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2. 생애 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사람)
3. 사회적경제기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에서 지정한 기초생활수급자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1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 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시장의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연구 지원 등

제1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기여한 착한 임대인 등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 1865 호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5조”로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u>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u> 지원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9조(재정지원) ① -- <u>제5조--</u>  -- <u>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u> --- - ---.</p> <p>② <u>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 1866 호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상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시 관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무상교통카드”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계약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무상교통 지원 계획)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무상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무상교통카드 발급대상) 무상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①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읍면동 행정복지센

터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무상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무상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무상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인 무상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제휴·협약 체결 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어르신이 사용한 무상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무상교통카드 사용 어르신이 타·시군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무상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고시 제2023-18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확정 결정되어 추진 중인 『산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3년 02월 03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산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92-3번지 외 3필지
    - 사업의 규모 : 1,62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교통과장)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 ~ 2023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 〈편입 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	면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4필지			9,432	1,624					
1	남원	산내	부운	산92-3	임	8,636	1,168	전라북도				
2	남원	산내	부운	산92-11	임	198	80	전라북도				
3	남원	산내	부운	산92-16	도	176	176	국유지 (건설부)				
4	남원	산내	부운	산92-6	도	422	200	국유지 (건설부)				

**남원시 공고 제2023 - 161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물가상승 및 경기 침체로 인한 공익상 감면이 필요할 경우 하수도 요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규정 신설(안 제16조제1항제5호)

-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입법예고기간 : 2023. 1. 27. ~ 2023. 2. 16.****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81 / 전북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036-207, 환경사업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jihun2475@korea.kr), 직접방문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환경사업소(☎063-620-58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사업소장

### 1. 개정이유

물가상승 및 경기 침체로 인한 공익상 감면이 필요할 경우 하수도 요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감면 규정 신설(안 제16조제1항제5호)

-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 ~ 2023. 2.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규칙 제 호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에”을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면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 관련 법령

## ■ 하수도법

-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20.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및 화재 |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6.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는 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 사용료를 감면
  8.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신설 2020.7.10.>
  9.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는 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 5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설 2020.12.31.>
- ②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등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7.10.>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2020.3.27.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3개년(2021~2023)에 걸쳐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중이었으나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 시 공공요금 동결·감면 등 정부 방침에 의거 감면 추진

○ 관련 조문

- 「하수도법」 제65조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감면기간 : 2023년 3월 ~ 8월(6개월)
- 감면내용 : '22년 대비 '23년 인상 요금만큼 감면 진행
- 하수도 요금 수익

- ▶ 2023년 하수도 요금 수익 (1년) : 4,416,763천원  
(6개월분) : 2,208,381천원
- ▶ 2022년 하수도 요금 수익 (1년) : 3,813,094천원  
(6개월분) : 1,906,546천원

○ 비용추계의 결과

- 감면액 : 301,835천원
- ※ 산출내역 : 2023년 하수도 요금 수익(6개월분) - 2022년 하수도 요금 수익(6개월분)  
(단위: 천원)

2023년 하수도 요금 수익(6개월분)	2022년 하수도 요금 수익(6개월분)	감면액
2,208,381	1,906,546	△301,835

####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감면액 전액 시비 편성

####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b>남원시장 귀하</b></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3-166호

##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 남 원 시 장

### 1. 제정이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예약취소 방지를 위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개정 (안 별표 1)

- 한옥 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10,000원 ~ 20,000원 인상

나. 시설사용 예약 취소 시 반환할 수 있는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  
(안 제9조제2항)

- 사용일 5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 전액
- 사용일 2~4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 70퍼센트

3. **입법예고기간** : 2023. 1. 27. ~ 2023. 2. 16.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5-5747), 이메일(seony02@korea.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063-620-5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예술과장

### 1. 개정이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예약취소 방지를 위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개정 (안 별표 1)

- 한옥 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10,000원 ~ 20,000원 인상

나. 시설사용 예약 취소 시 반환할 수 있는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 (안 제9조 제2항)

- 사용일 5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전액
- 사용일 2~4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27 . ~ 2023. 2. 16.(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물가대책심의: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사용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을 “사용일 5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개시 예정일 전날까지”을 “사용일 2~4일 전까지”로 하고, “100분의 80”을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용개시 예정일 당일 오후 3시까지”를 “사용일 1일 전까지”로, “100분의 70”을 “70퍼센트”로 한다.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용일 당일 예약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미 환불”

제2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체험 및 연수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구 분	4시간 기준			비 고
	대 관	냉 방	난 방	
체험 · 연수시설	50,000	15,000	15,000	1. 4시간 초과 사용시 1시간당 10,000원 추가 2. 숙박객은 냉, 난방료 감면

### 한옥 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구분	전용면적	주 중	주 말	비 고
한옥숙박 체험시설	2인실(15.84㎡)	60,000원	80,000원	2인실 : 1실 4인실 : 4실 6인실 : 2실 8인실 : 1실 10인실 : 1실
	4인실(21.78㎡)	80,000원	100,000원	
	6인실(24.30㎡)	100,000원	120,000원	
	8인실(33.75㎡)	130,000원	150,000원	
	10인실(37.80㎡)	150,000원	170,000원	

- ※ 1. 주말이란 금·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하루 전일을 말함  
 2. 수학여행단, 농악 캠프 참가자는 사용료 별도 적용 가능  
 - 학생(초, 중, 고, 대학생) : 1인당 10,000원  
 - 일반인(기업, 교원 연수생 등) : 1인당 20,000원 이하

### 농악캠프장 사용료 (제7조 관련)

구분	기준	운영 실수	기준 인원	이용료(원)		비고
				주중	주말	
농악캠프장	단체실	4실	30	350,000	380,0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p> <p>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p> <p>2.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p> <p>3. <u>사용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u>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p> <p>4. <u>사용개시 예정일 전날까지</u> 예약을 취소한 경우: <u>100분의 80</u></p> <p>5. <u>사용개시 예정일 당일 오후 3시</u>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u>100분의 70</u></p> <p>&lt;신 설&gt;</p>	<p>제9조(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u>사용일 5일 전까지</u> ----- ----- ---</p> <p>4. <u>사용일 2~4일 전까지</u>----- -----: <u>80퍼센트</u></p> <p>5. <u>사용일 1일전까지</u> ----- -----: <u>70퍼센트</u></p> <p>6. <u>사용일 당일 예약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u> : <u>미 환불</u></p>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u>제4장 보칙</u>	③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 붙임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붙임

## 현행 조례

## 남원시 합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7. 6.]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1797호, 2021. 7. 6., 일부개정]

전라북도 남원시(국악진흥담당), 063-620-61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악과 국악을 널리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원시 합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합파우 소리체험관(이하 “소리체험관”이라 한다)의 체험 및 연수시설과 한옥 숙박 체험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란 체험 및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소리체험관은 남원시(이하“시”라 한다) 술미안길 14-19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① 소리체험관은 농악과 국악의 체험 및 연수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 소리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농악과 국악의 체험 및 연수에 필요한 시설
2. 한옥 숙박 체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관리·운영)** ① 소리체험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단, 소리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소리체험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소리체험관 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2.7.6.>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개정 2022.7.6.>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 한 날 <개정 2022.7.6.>

⑤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6.>

**제6조(운영시간)** ① 소리체험관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입실시간은 당일 오후 3시부터로 하고 퇴실시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숙박 체험객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사용료)**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단체 관광객 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
3.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2(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프로그램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9.]

**제8조(체험료)** ①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유료 특별공연의 체험료는 임시대표소를 지정하여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예매처 등을 선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 유료 특별 공연의 관람권을 위탁 판매할 경우 위탁 판매자에게 총 대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
2. 수학여행단, 단체 관광객 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후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개정 2022.7.6.>
3. 사용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5. 사용개시 예정일 당일 오후 3시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 등에 반환한다.

**제10조(수입금의 처리)** ① 사용료 및 체험료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다음 날 금융기관에 개설한 전용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및 주말에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월요일에, 휴일에 발생한 수입금은 그 다음 날에 전용 계좌에 예치한다.

② 예치된 수입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

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13조(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소리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단체관 광객을 소리체험관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알선 활동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9.4. 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